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급격한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생활주변의 녹지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녹지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 나.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녹화시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내의 녹지축에 관한 사항을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 함 (안 제2조)
- 나. 녹지축에서 사용되는 주녹지축, 부녹지축, 광역녹지축, 조성형 녹지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함 (안 제3조)
- 다.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축을 설정하도록 하고, 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규정 함 (안 제4조의2)

라. 설정한 녹지축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때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군수·구청장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녹지축이 반영되도록 권고 함 (안 제4조의3)

마.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정시책을 통한 녹지축을 보전·관리·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의4)

- 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시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의 반영
- 2) 주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 3) 광역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 4) 도시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조성형 녹지축 확충계획을 우선 적용
- 5) 광로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 6)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

바. 기본계획 수립 시 “녹지의 보전과”를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과”로 변경 함 (안 제5조)

사.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시 “기존녹지의 보전”을 “기존녹지와 녹지축의 보전”으로 변경 함 (안 제11조)

아. 인천광역시도시녹화자문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 “녹지보전 및”을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과”로 변경 함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구역내 공공기관이 설치한 녹지”를 “행정구역내 녹지축,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로 한다.

제3조제3호에 제3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녹지축”이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골격으로써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주녹지축”이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현산, 계양산, 철마산, 소래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인천대공원, 장수천변, 오봉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기맥으로 연결된 S자 모양의 녹지를 말한다.

나.“부녹지축”이란 한남정맥을 포함한 S자 녹지축에서 분기된 여타의 기맥으로 형성된 녹지를 말한다.

다.“광역녹지축”이란 시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와 연결되는 한남정맥(가현산~소래산)과 도시단위를 넘어서 광역적인 생물의 이동을 고려한 녹지를 말한다.

라.“조성형 녹지축”이란 조성된 공원, 시설녹지(완충녹지, 연결녹지), 공공공지, 하천, 녹도 등을 선형으로 연결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녹지를 말한다.

제4조에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녹지축 설정) ① 시장은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의3(녹지축의 반영) 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녹지축

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녹지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지축의 설정과 반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4(녹지축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시책을 통한 녹지축을 보전·관리·복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의 반영
2. 주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3. 광역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4. 도시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조성형 녹지축 확충계획을 우선적용
5. 광로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의 설치
6.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

제5조제2항제1호 중 “녹지의 보전과”를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존녹지의 보전”을 “기존녹지와 녹지축의 보전”으로 한다.

제35조 중 “녹지보전 및”을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공공기관이 설치한 녹지, 일정면적이상의 녹지(훼손된 녹지와 방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 -----행정구역내 녹지 축, 공공기관이 조성한 ----- ----- ----- ----- ----- -----
제3조(정의) ----- -----	제3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녹지축”이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골격으로써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주녹지축”이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현산, 계양산, 철마산, 소래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인천대공원, 장수천변, 오봉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기맥으로 연결된 S자 모양의 녹지를 말한다.

4. ~ 12. (생략)

<신설>

나. “부녹지축”이란 한남정맥을 포함한 S자 녹지축에서 분기된 여타의 기맥으로 형성된 녹지를 말한다.

다. “광역녹지축”이란 시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와 연결되는 한남정맥(가현산~소래산)과 도시단위를 넘어서 광역적인 생물의 이동을 고려한 녹지를 말한다.

라. “조성형 녹지축”이란 조성된 공원, 시설녹지(완충녹지, 연결녹지), 공공공지, 하천, 녹도 등을 선형으로 연결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녹지를 말한다.

4.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녹지축 설정) ① 시장은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의3(녹지축의 반영) 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녹지축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때에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녹지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지축의 설정과 반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4(녹지축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시책을 통한 녹지축을 보전·관리·복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의 반영

2. 주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3. 광역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4. 도시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조성형 녹지축 확충계획을 우선 적용

5. 광로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

	<u>의 설치</u> <u>6.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u>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u>녹지</u>의 보전과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구상 2. ~ 3.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녹지 및 녹지축</u>----- -----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① 각종 개발사업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u>기존녹지</u>의 보전(기존 수목 및 표토의 현황과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화의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① ----- ----- ----- -----<u>기존녹지와 녹지축</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설치 및 기능) <u>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u>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녹화자문위원회를 둔다 1. ~ 5. (생략)	제35조(설치 및 기능) <u>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과</u> ----- ----- ----- ----- 1. ~ 5.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자연적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 자연환경보전법 ○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산림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환경영향평가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세부내용 별지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에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광역시·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시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
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
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
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
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
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
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를 허가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 [본조신설 2009.12.29]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산림기본법】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와 국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